

# 미국 농식품 수입 가이드북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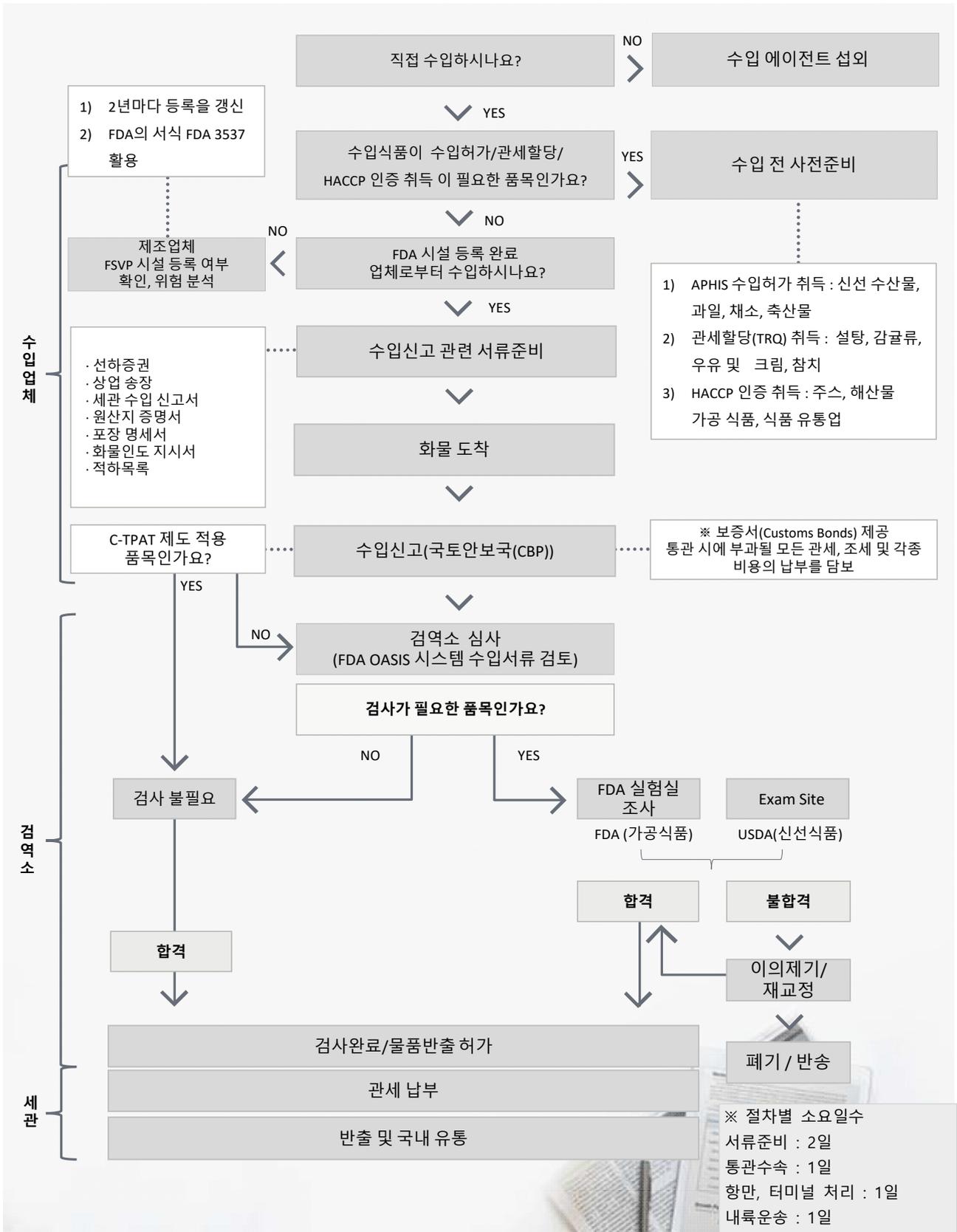
---

1. 수입 전 사전준비	8
2. 수입신고 관련 서류 준비	15
3. 수입신고	22
4. 통관 및 검역	23
5. 반출 및 운송	31





# 미국 농식품 수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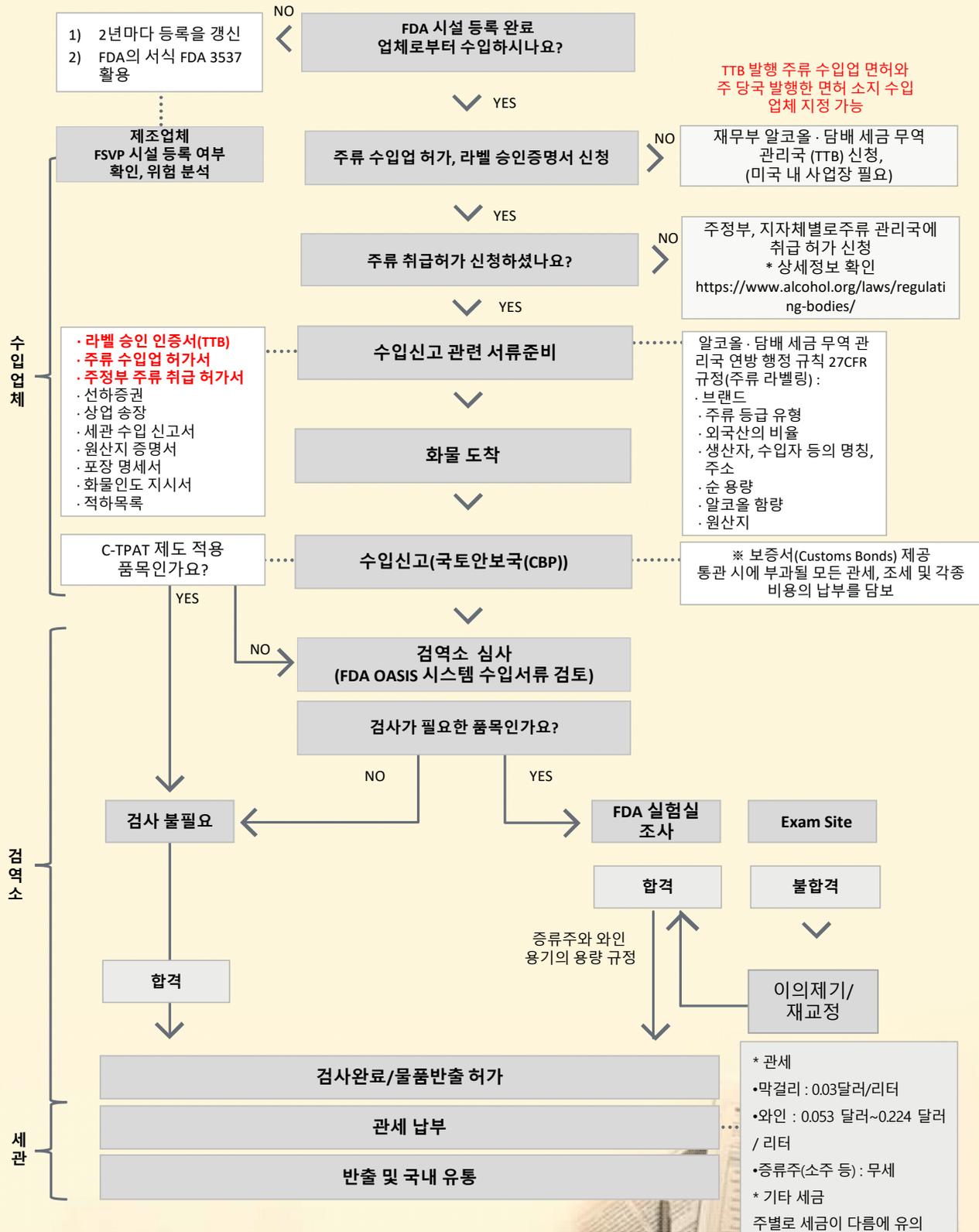


\* 보증서(Customs Bonds) 제공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조세 및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

※ 절차별 소요일수  
 서류준비 : 2일  
 통관수속 : 1일  
 항만, 터미널 처리 : 1일  
 내륙운송 : 1일  
 \*품목 및 선적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출처 : Doing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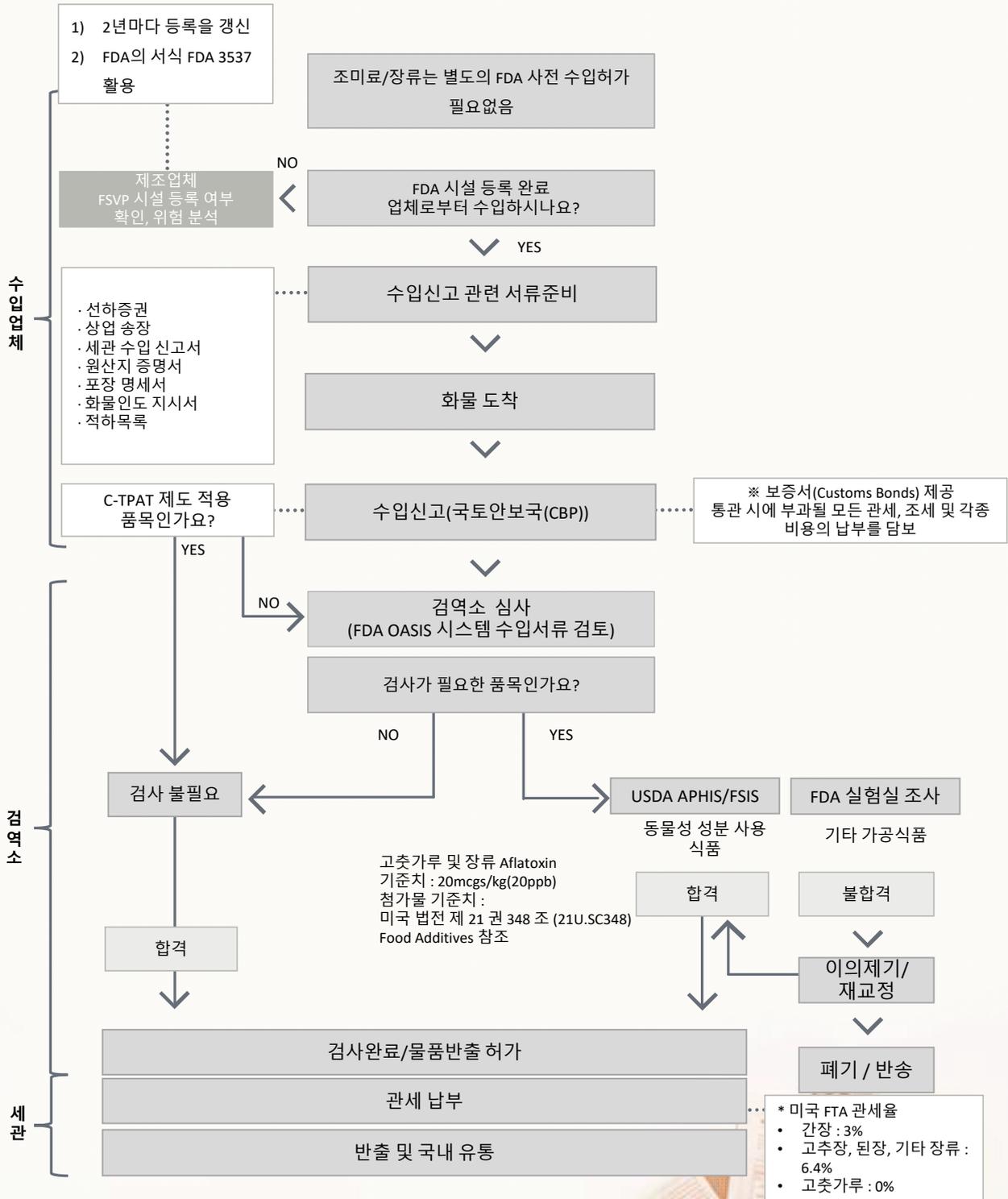


# 미국 주(酒)류 수입 프로세스





# 미국 조미료/장류 수입 프로세스



## 1. 수입 전 사전준비

- 미국에서 농식품 수입 시 사전 수입요건 확인 및 품목별 수입 허가 등 수입신고 전 사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하며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 □ 품목별 수입요건

#### 가. 수산물

- 미국 측 수입업자들은 수산물 수입 허가증을 미동식물검역소(APHIS)에서 받아야 함
- 또한 FDA규칙에 의해서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해외의 공급업체들이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HACCP를 통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조개류 품목은 NSSP(National Shellfish Sanction Program, 전미 조개류 허가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수입업체는 세관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화물 도착 5일전부터 제출 가능) FDA는 선박도착을 통지받고 서류를 검토한 이후 검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됨
  - 대부분은 수입되는 수산물이 금지품목이 아니거나 질병의 의심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FDA는 수산물 샘플을 검사하지 않고 수입물품의 반입이 가능함
- 냉동생선은 소매업체나 레스토랑에서 녹여서 판매할 때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상태여야 하며 수출을 위한 운송기간 중 포장과 냉동/습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연안어종이나 산업화에 따른 황폐화로 인하여 각종 병균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 4개 품목은 NSSP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해당품목 : 굴(Oyster), 가리비(Scallop), 홍합(Mussel), 조개(Clam)
  - NSSP 가입국가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며, 양식장 및 수출입업체가 지정됨
  - 한국은 NSSP 가입국이며, 거제도 등 6개 양식장과 6개 업체가 NSSP 허가를 받음
  - FDA에서 몇몇 국가의 양해각서(MOU)를 HACCP 프로그램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개류 MOU를 미국 FDA와 교환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조개류는 MOU 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MOU가 아직 체결되지 않음
- 말린 생선은 크기가 5 인치 이상인 경우 내장을 제거한 제품이어야만 함
  - 5인치 이하의 경우도 안전성 문제로 인해 내장을 제거해야 통관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됨

## 나. 신선과일

- 미국 측 수입업자들은 농축산물 수입 허가증을 APHIS에서 받아야 함
- 수입 허가를 요청하려면 APHIS로 문의하여야 하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 USDA-APHIS,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ermit Unit ■

- 위치 : 4700 River Road, Unit 133 Riverdale, MD 20737
- Tel : +1 877 7705990
- 전자 메일: [permits@aphis.usda.gov](mailto:permits@aphis.usda.gov)

- APHIS에서는 수입자가 인터넷으로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진행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인 e허가 (ePermit) 시스템을 도입
- 이를 통해 허가 신청서 작성, 데이터 처리, 허가서 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수입 허가를 신청하는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 [www.aphis.usda.gov/permits/learn\\_epermits.shtml](http://www.aphis.usda.gov/permits/learn_epermits.shtml)
- 배 검역조건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승인된 봉지로 씌운 후 재배되어야 함
  - 재배지 검사 실시
  - 봉지를 씌운 직후 :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사
  - 수확기 : 한국과 미국의 식물검역관 공동검사
  - 수확한 과실에 대해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후 한국의 식물 검역증 및 미국의 대외식물검역증이 첨부되어야 함
- 사과 검역조건
  - 한국에서 1.1℃에서 40일간 저온처리 후 미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MB훈증(48g/m<sup>3</sup>/10℃ 이상/12시간 등)처리를 해야 함
  - 한국의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함
- 감귤 검역조건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한·미 식물검역관에 의한 공동 재배지검사 실시
  - 낙화 후 검사는 신규지역 지정 시에만 공동검사
  - 생육기간 중 감귤 궤양병 검정을 위한 박테리오파지 테스트 실시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 408조(F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서 설정한 만코제브(mancozeb) 잔류기준인 10ppm을 지켜야함
  - 기타 채소류 검역조건
    - PPQ(Plant Protection & Quarantine, 식물 보호 및 격리) 규정에 따라 수입 가능 부위 확인 필요
    - 채소에 뿌리(root)가 있는 경우 식용채소(edible vegetable)에서 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Live trees and other plants)로 분류될 수 있음
    - 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은 식용목적이 아닌 미국에서 재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까다로움
    - 채소(vegetable)는 먹는 부위에 따라 꽃, 잎, 줄기, 뿌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미 농무부가 관할하는 PPQ규정 상 신선채소류는 지정된 부위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
    - 지정 이외의 부위가 포함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새송이 버섯의 경우 장기간 수송에 따른 품질 유지를 위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 [www.cbp.gov/trade/quota/guide-import-goods/commodities](http://www.cbp.gov/trade/quota/guide-import-goods/commodities)

#### 다. 축산물

- 미국 측 수입업자들은 농축산물 수입 허가증을 APHIS에서 받아야 함
-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APHIS의 국립 수출입 센터(NICIE)에 문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Ⅰ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Ⅰ

- 위치 : USDA-APHIS-NCIE 4700 River Road, Unit 39 Riverdale, MD 20737
- Tel : +1 301 851 3300, 옵션 5번
- Fax : +1 301 734 8226
- 전자 메일 : [AskNCIE.Products@aphis.usda.gov](mailto:AskNCIE.Products@aphis.usda.gov)

- 한국 축산물 가공품은 육류 종류에 따라 다른 허용 기준 적용, 확인 필요
- 축산물 가공 식품류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축산물 포함 비율에 따라 USDA가 아닌 FDA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경우 FDA 생산 기지 등록 후 수출 가능
- 관련정보 : [www.ers.usda.gov/topics/animal-products/cattle-beef/trade.aspx#.UjyOvsZLP\\_4](http://www.ers.usda.gov/topics/animal-products/cattle-beef/trade.aspx#.UjyOvsZLP_4)

#### 라. 저산성식품 및 산성화식품

- 저산성식품 및 산성화식품은 열처리 및 진공포장하여 소매점에서 상온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Botulism)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 저산성식품(LACF : Low-acid Canned Food) :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에 포장된 pH가 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치통조림 등이 해당됨
- 산성식품(AF : Acidified Food) :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이 저산성식품에 산 등을 첨가하여 pH가 4.6이하로 조절한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됨
-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업체는 이를 확인해야 함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등록업체에 FCE(Food Canning Established Number, 제조시설등록번호)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는 수입허가가 아니며,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 통관 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 됨

## □ TRQ 취득

- 미국 설탕, 감귤류, 우유 및 크림, 참치, 목화 등의 제품에 TRQ(관세 할당)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사전에 관세 할당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관련정보 : [www.cbp.gov/trade/quota/guide-import-goods/commodities](http://www.cbp.gov/trade/quota/guide-import-goods/commodities)

## □ HACCP 취득

- HACCP은 ‘식품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식품안전관리체계’ 를 의미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 까지 단계별로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 관리체계를 말함
- 미국 정부와 바이어들은 HACCP 인증이 없는 경우 안전한 수산물로 인정하지 않아 수산물 미국 수출 시 필수적으로 HACCP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주스 가공업체, 식품 유통 및 서비스 업체, 해산물 가공업체 등은 필수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체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HACCP 인증 신청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계획서, 안전관리인증 기준,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출 필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16층
  - 전화 : 대표전화 1599-1102
  - 팩스(인증) : 042-255-1102
- HACCP 인증 웹사이트
  - [www.haccpkorea.or.kr/info/info\\_01\\_01.do?menu=M\\_02\\_01](http://www.haccpkorea.or.kr/info/info_01_01.do?menu=M_02_01)

## □ 해외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rule)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rule)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에서는 반드시 해외 공급 업체가 FDA의 규제 요구사항에 맞추어 식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해외시설인증, 안전시스템운영 등)
- 해외공급업체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험 요소와 자사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야 함

### 가. 위험 분석

- 수입자는 수입하는 식품의 질병데이터, 과학연구서, 기타정보를 토대로 위험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위험 범위란 기생충 및 박테리아 등 생물학적 잠재 위험과 방사선, 살충제 잔존물, 천연 독소, 색소, 알레르기 유발 등 화학적 위험 요소와 유리와 같은 물리적 위험 요소 등임
  - 위험 분석 시 고려 요소는 식품의 배합, 수출업체의 시설 설비 상태, 원재료 및 기타 성분, 용도, 수확, 재배, 제조, 포장 등 모든 공정 과정, 운송 방식, 포장, 라벨링, 저장, 유통, 직원의 위생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내용이 포함됨
  -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급 업체의 연간 현지 시설 검사, 수입 식품의 샘플 접수 및 사전 검사, 공급업체 관련 식품 안전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를 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업체와 거래 불가함
  - 면제 기준
    - 수입품의 완제품 여부, 재료 및 성분에 따라 면제 기준이 다름
    - 현재 모범 제조 방법(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적용을 받고 있는 수입자는 FSVP가 면제됨

### 나. 시설 등록

- FDA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공 식품을 관리하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지(제조, 가공, 포장, 저장 등)를 FDA에 등록해야 함
  - 관련정보 : [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 시설등록 개요
  - 식품 제조, 수출입 등 유통, 판매 등 업체는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함
  -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등록을 보류할 수 있음 (등록보류 제품은 미국 내 유통 불가)
- 등록 대상 시설
  - 국내외 식품 제조 혹은 가공 시설
  - 국내외 식품 포장 시설

- 국내외 식품 보관 시설
- 한 개 이상의 시설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혹은 보관을 하는 해외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 또 다른 제조/가공을 위해 기타 해외 시설로 식품을 보낼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해서는 오직 두 번째 해외 시설만 등록을 진행
  - 만일 두 번째 해외 시설에서 라벨 부착 등 최소한의 활동만 진행할 경우, 두 시설 모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식품을 포장 혹은 보관하는 해외 시설 또한 등록을 진행해야 함
- 아래 규제에 해당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함
  -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재료
  - 영아용 조제분유
  - 음료(알코올음료 및 병물 포함)
  - 과일 및 채소
  - 생선 및 해산물
    - 메기목에 속하는 생선(예 : Catfish, tra, swai, basa)을 취급, 가공하는 시설은 USDA 소관이므로 FDA 식품시설 등록을 진행하지 않음
  - 유제품 및 달걀
  - 식품이나 식품의 일부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 통조림식품 및 냉동식품
  - 베이커리제품, 스낵 및 캔디 (껌 포함)
  - 살아있는 식용 동물
  - 사료
- 등록절차
  - FDA에 등록한 시설은 2년(짝수 년도)마다 10월 1일~12월 31일 사이 재등록을 해야 함
  - 재등록 기간에 연장하지 않은 시설은 만료 시설, 등록하지 않은 시설로 간주
  - 시설 등록은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소유주, 운영자, 에이전트 혹은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이 진행할 수 있음
  - 해외 시설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함
  - FDA와 시설간의 연락을 위해 에이전트가 필요하며 미국 내 에이전트가 시설 등록을 진행
- 시설 등록 방법
  - FDA의 서식 FDA 3537을 통해 등록, 재등록 혹은 업데이트를 진행
  - 온라인 등록 : [www.fda.gov/furls](http://www.fda.gov/furls)
  - 온라인 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은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센터는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동부시간) 운영

- 전화 : 미국 국내 +1 800 216 7331 / 240 247 8804 / 240-247-8804
  - 팩스 : 301-436-2804
  - 이메일 : Furlis@fda.gov
  - 시설에 인터넷이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록 서류를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냄
  - 주소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od Facility Registration HFS-681 5001 Campus Drive College Park, MD 20740 USA
- 등록에 필요한 정보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2020년 10월 1일부터는 FDA가 인정하는 시설의 고유시설식별번호(Unique facility identifier-UFI)
    - 시설 주소
    - 모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해당되는 경우)
    - 해외 시설의 경우, 시설의 미국 내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비상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시설을 담당하는 소유주, 운영자 혹은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해당되는 식품 카테고리
    - 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 유형
    - FDA의 시설 점검을 허가할 것이라는 보증
    - 제출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자의 기재 권한을 허가한다는 증명서
  - 등록 확인
    - FDA는 시설 등록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 등록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를 배정
  - 위해평가, 예방조치, 기록 및 확인 의무
    - 식품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식품안전계획서는 만들어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함. FDA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FDA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문서로 식품의 생산 및 제조, 유통, 사고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됨
    - 따라서 식품시설에 검사를 나온 FDA 검사관이 문서화된 계획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시설위험도를 평가할 때 식품이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을 준수해 제조되었다는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고 문서화해야 함
    - 이를 서면고객보증서(written customer assurances)라고 함. 이는 고객에게 관리책임이 주어짐. 소형업체는 2018년 9월, 일반업체는 2019년 9월부터 이 규정을 따라야 함
  - 시설 실사
    - 해외시설은 법 발효 1년 내 600개 이상 검사, 5년 동안 매년 2배씩 확대 예정임
    - 고위험 국내시설은 법 발효 5년 이내 점검 후, 매 3년마다 실사 예정임
    - 고위험군 아닌 국내시설은 법 발효 7년 이내 점검 후, 매 5년마다 실사 예정임

-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인증서 마련
  - 고위험 식품에 대해서 수입되기 전 고위험식품인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식품분석 실험실 인증
  - 정부 또는 인증을 받은 실험실만 식품 분석이 가능함
- 수입업체의 해외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의무
  - 각 수입업자는 위해에 근거하여 해외 식품공급업체의 생산제품이 미국법령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활동을 하도록 규정

## 2. 수입신고 관련 서류 준비

-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할 시 요구되는 제반 서류들을 수출자와 준비해야 함
  - 미국 식품 수입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로는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 송장, 세관 수입 신고서(수입자와 공동 준비), 구매 확인서,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수입 허가 증빙서류 등 임
  -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체결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발급방식’을 따르고 있음. 미국의 수입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미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수입신고 서류>

- |                         |            |
|-------------------------|------------|
|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 위생증명서    |
| - 상업 송장                 | - 포장 명세서   |
| - 세관 수입 신고서(수입업자 공동 준비) | - 화물인도 지시서 |
| - 원산지 증명서               | - 적하목록     |

출처 : Trade NAVI(www.tradenavi.or.kr)

<수입자 제출 정보>

- |   |  |
|---|--|
| 1. Manufacturer (orsupplier) : (제조사 또는 공급자)   | 7.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식별 번호) |
| 2. Seller (or owner) : (판매자 또는 소유주)           | 8. Consignee number : (수하인 번호)   |
| 3. Buyer (or owner) : (구매자 또는 소유주)            | 9. Country of origin : (원산지)   |
| 4. Ship-to party : (수취인)                      | 10. Commodity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 : (HS 번호)  |
|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 (컨테이너 적입 장소) |  |
| 6. Consolidator (stuffer) : (혼재업자)            |  |

출처 : Trade NAVI([www.tradenavi.or.kr](http://www.tradenavi.or.kr))

- 과거 해당 식품 수입을 거절한 제 3국가 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 2013년 5월 30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과거 수입이 거절된 경우가 있을 시 이러한 내역(국가 리스트)을 사전 통보 시 반드시 명기해야 함
  - 관련정보 : [www.gpo.gov/fdsys/pkg/FR-2013-05-30/pdf/2013-12833.pdf](http://www.gpo.gov/fdsys/pkg/FR-2013-05-30/pdf/2013-12833.pdf)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Date: 02/01/1999		<b>BILL OF LADING</b>		Page 1			
<b>SHIP FROM</b>			Bill of Lading Number: <u>06141411234567890</u>				
Name: <u>ABC Company</u> Address: <u>1000 ABC Drive</u> City/State/Zip: <u>Any City, AB, 10000</u> SID#: _____			 (402) 06141411234567890				
Name: <u>XYZ Company</u> Location #: <u>0669</u> Address: <u>9000 XYZ Drive</u> City/State/Zip: <u>Some City, ZY 90000</u> CID#: _____			CARRIER NAME: <u>LTL Transportation</u> Trailer number: _____ Seal number(s): _____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State/Zip: _____			SCAC: <u>ABCD</u> Pro number: <u>12345678901234567890</u>				
<b>THIRD PARTY FREIGHT CHARGES BILL TO:</b>			 (9012K) SCAC12345678901234567890				
SPECIAL INSTRUCTIONS:			Freight Charge Terms: (freight charges are prepaid unless marked otherwise) Prepaid _____ Collect <u>X</u> 3 <sup>rd</sup> Party _____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Master Bill of Lading: with attached underlying Bills of Lading				
<b>CUSTOMER ORDER INFORMATION</b>							
CUSTOMER ORDER NUMBER	# PKGS	WEIGHT	PALLET/SLIP (CIRCLE ONE)		ADDITIONAL SHIPPER INFO		
<u>45012345698</u>	<u>144</u> ctns	<u>1152</u> lbs	<input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u>6805673</u>	<u>15</u> ctns	<u>45</u> lbs	<input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input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input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input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b>GRAND TOTAL</b>	<b>159</b> ctns	<b>1197</b> lbs					
<b>CARRIER INFORMATION</b>							
HANDLING UNIT		PACKAGE		COMMODITY DESCRIPTION		LTL ONLY	
QTY	TYPE	QTY	TYPE	WEIGHT	H.M. (X)	NMFC #	CLASS
<u>1</u>	<u>Pkts</u>	<u>48</u>	<u>Ctns</u>	<u>384</u> lbs		<u>154865 00</u>	<u>70</u>
<u>2</u>	<u>Pkts</u>	<u>96</u>	<u>Ctns</u>	<u>768</u> lbs		<u>168955 03</u>	<u>92.5</u>
<u>15</u>	<u>ctns</u>	<u>15</u>	<u>Ctns</u>	<u>45</u> lbs		<u>168945 01</u>	<u>100</u>
<b>18</b>		<b>159</b>		<b>1197</b>		<b>GRAND TOTAL</b>	
Where the rate is dependent on value, shippers are required to state specifically in writing the agreed or declared value of the property as follows: The agreed or declared value of the property is specifically stated by the shipper to be not exceeding _____ per _____.						COD Amount: \$ _____ Fee Terms: Collect: <input type="checkbox"/> Prepaid: <input type="checkbox"/> Customer check acceptable: <input type="checkbox"/>	
NOTE Liability Limitation for loss or damage in this shipment may be applicable. See 49 U.S.C. • 14706(c)(1)(A) and (B). RECEIVED, subject to individually determined rates or contracts that have been agreed upon in writing between the carrier and shipper, if applicable, otherwise to the rates, classifications and rul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carrier and are applicable to the shipper, on request. The shipper hereby certifies that he/she is familiar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NMFC Uniform Straight Bill of Lading, including those on the back thereof, and the said terms and conditions are hereby agreed to by the shipper and accepted by the carrier and his/her assigns.						The carrier shall not make delivery of this shipment without payment of freight and all other lawful charges. _____ Shipper Signature	
SHIPPER SIGNATURE /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materials are properly classified, packaged, marked and labeled, and is in proper condition for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DOT.		Trailer Load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By Shipper <input type="checkbox"/> By Driver		Freight Count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By Shipper <input type="checkbox"/> By Driver/pallets said to contain <input type="checkbox"/> By Driver/Pieces		CARRIER SIGNATURE / PICKUP DATE Carrier acknowledges receipt of packages and required papers. Carrier certifies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and/or carrier has the DOT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or equivalent documentation in the vehicle. Properly described above is received in good order, except as noted.	

Ⅰ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Ⅰ

**Example of an acceptable COMMERCIAL INVOICE  
for US Importer Security Filing and US Customs Clearance**

**IMPORTANT TO NOTE:**

Labels in **GREEN** are required for US Importer Security Filing (ISF 10+2) prior to vessel LOADING at departure port. In **addition** to items in green, labels in **BLUE** are **also** required for US Customs clearance upon arrival in US. Some in **BLUE**, e.g. Container Number, Seals, etc. may only be available on other documents, e.g. packing list.

<b>SELLER</b> (Sold-by entity the request/PO was sent to; supplier/vendor) Company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b>INVOICE NUMBER</b>	<b>INVOICE DATE</b>
		INCOTERMS® 2010 (Terms of Sale) Incoterms® acronym Named location where carriage is paid from or paid to Freight Payment Terms: collect or prepaid	
<b>BUYER</b> (Kodak Sold-to entity that placed the request/PO; importer). Common example noted. Kodak company name, i.e. Eastman Kodak Co. Address, i.e. 343 State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 i.e. Rochester, NY 14650 US		PAYMENT TERMS (for the product)	
		<b>SHIPMENT NUMBER</b>	<b>CONTAINER NUMBER</b> If applicable for full containers
<b>SHIP-TO</b> (First US delivery address) Company name, i.e. Eastman Kodak Company C/O e.g. drop-ship company if other than Kodak Address, include building, floor as applicable City, Postal Code, US Contact name, phone number		<b>SEALS</b> If applicable for full containers.	<b>MODE OF TRANSPORT</b> Examples: air freight, ocean FCL, or ocean LCL
		<b>BILL OF LADING NUMBER</b> HWB MWB	
<b>ULTIMATE CONSIGNEE</b> (specific delivery location after initial Ship-to delivery, if applicable) Address, include building, floor as applicable City, Postal Code, US Contact name, phone number		<b>SHIPPER</b> (Seller's Ship-from entity; exporter, e.g. seller's factory, warehouse or 3rd party distributor) Company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b>CONTAINER STUFFING LOCATION</b> (Physical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Ocean FCL Company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b>CONSOLIDATOR</b> (Entity that actually stuffs the container) Ocean FCL Company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b>TOTAL PKGS</b> (cartons)		<b>TOTAL PIECES</b> (pallets)	<b>TOTAL GROSS WEIGHT (KG)</b>
		<b>TOTAL NET WEIGHT (KG)</b>	
<b>(KODAK) MATERIAL NUMBER</b>	<b>NET WGT (KG)*</b>	<b>QUANTITY</b>	<b>UNIT OF MEASURE</b>
		<b>DESCRIPTION</b>	<b>UNIT PRICE &amp; CURRENCY</b>
		<b>TOTAL AMOUNT &amp; CURRENCY</b>	
		PRECISE PRODUCT/MATERIAL DESCRIPTION PACKAGE #, QTY, SERIAL NUMBER COUNTRY OF ORIGIN (where goods are manufactured) MANUFACTURER 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code (US-HTS) KODAK PO, RA Number or other Kodak reference identifier	
Continue on additional pages if needed. Page of		<b>SUB TOTAL BILLED VALUE</b>	
		<b>TOTAL BILLED VALUE</b>	

【 세관 수입 신고서(CID : Customs Import Declaration) 】

U. S. Department of Justice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CMB APPROVAL No. 1117 - 0009
<b>CONTROLLED SUBSTANCES IMPORT / EXPORT DECLARATION</b>		See reverse for Privacy Act
<i>(Read instructions on reverse before completing)</i>		
<b>1. a</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IMPORT DECLARATION</b> Nonnarcotic Substances in Schedules III, IV, V <input type="checkbox"/> <b>EXPORT DECLARATION</b> Nonnarcotic Substances in Schedules III, and IV and all substances in Schedule V		<b>U.S. CUSTOMS CERTIFICATION</b> Date of Departure / Arrival Name of Carrier / Vessel Date of Certification Signature of Customs Officer
<b>IMPORTER/EXPORTER (Name and Address)</b> <b>1b</b> Forest Dale Laboratories 1107 Fall River Parkway Maplewood, VT 05040 DEA REGISTRATION NO. RF1234567		<b>BROKER OR FORWARDING AGENT, IF USED (Name and Address)</b> <b>1c</b>
<b>2. CONTROLLED SUBSTANCES TO BE IMPORTED OR EXPORTED</b>		
<b>2a. NAME AND QUANTITY OF DRUG or PREPARATION</b> <small>(Enter names as shown on labels, numbers and sizes of packages, strength of tablets, capsules, etc., CSA Drug Code and NDC Number)</small>  Anadrol  Four Bottles 100 Tablets/Bottle 50mg/Tablet  CSA Drug Code 4000 NDC 0051-8633-33	<b>2b. CONTROLLED SUBSTANCE CONTENT OF DRUG OR PREPARATION</b> <small>(Expressed as acid, base or alkalioid. Enter names of controlled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rug, compound, or preparation)</small>  Oxymetholone - 20 grams	<b>2c. DATE IMPORTED/EXPORTED AND ACTUAL QUANTITY</b> <small>(Completed by registrant at time of transaction)</small>
<b>3. a</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FOREIGN</b> <input type="checkbox"/> <b>DOMESTIC</b> <b>PORT OF EXPORTATION (last U.S. Customs Port) AND APPROX. DEPARTURE DATE</b> Milan, Italy - 12 Jul, 2000		<b>3. b</b> <input type="checkbox"/> <b>FOREIGN</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DOMESTIC</b> <b>PORT OF IMPORTATION (first U.S. Customs Port) AND APPROX. ARRIVAL DATE</b> Boston, Massachusetts - 12 Jul, 2000
<b>4. MODE OF TRANSPORT, NAME OF VESSEL / CARRIER (if known)</b> Air Freight - DHL		<b>NAME OF ALL INTERMEDIATE CARRIERS</b>
<b>5. NAME AND ADDRESS OF FOREIGN CONSIGNEE/CONSIGNOR</b> Profarmaco Milano, S.R.L. Via Gallarate, 43 20155 Milan, Ital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substance(s) to be <input checked="" type="checkbox"/> Imported, <input type="checkbox"/> Exported, are intended for <input checked="" type="checkbox"/> Legitimate medical need, <input type="checkbox"/> Scientific research, <input type="checkbox"/> Other (If intended for reexport beyond the country of destination described in block 5 above, attach documentation per Title 21, CFR 1312.27.) If used as "Export Declaration", attach documentation that importation is not contrary to the laws or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b>SIGNATURE OF AUTHORIZED INDIVIDUAL OF IMPORTER/EXPORTER, BROKER OR FORWARDING AGENT</b>		<b>DATE</b> <b>C</b> 24 Jun, 2000
<b>B</b>		<b>NAME OF FIRM AND TELEPHONE NUMBER</b> <b>D</b> Forest Dale Laboratories 802-645-2143
DEA Form - 236 (Apr 1988)		Previous edition dated 4/80 is OBSOLETE.





### 3. 수입신고

#### □ 적하목록 사전제출 : (24 Hour Rule)

- 운송업자는 전자적 방법(AMS :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통관당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911 테러발생 이후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임
  - 적하목록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우범화물에 대한 위협성을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함임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구분	세관 통보시한
해상 (컨테이너 화물)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해상 (벌크 화물)	미국 도착항 도착 24시간 전
해상 (항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전
항공 (일반적인 경우)	미국 도착항 도착 4시간 전

- 제출정보는 다음과 같음
  - 화물에 대한 정보(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
  -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
  -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0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00달러 부과

#### □ 수입신고 접수

- 수입물품의 화주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통관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을 준비
- 2013년 12월부터 모든 수입식품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사전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FDA가 분석·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
-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 문서 검토내용이 미 통관 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시스템에서 입력됨

- HS 코드별 구분에 따라 검역 담당 기관(가공식품의 경우 미 식약청인 FDA, 농수산물의 경우 미 농림부인 USDA 등)에 자동 통지됨. 검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관에 위치한 관련 정부 기관이 검역을 진행함
  - 가공식품의 경우 FDA 데이터베이스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하면, 이를 통해 FDA가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
  - 육류가 5%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 등 특수한 경우 FDA와 USDA의 검역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함
  - 관세국경 보호청의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FDA의 OASIS 시스템에 수입신고서를 접수시키고 FDA에 수입허가를 요청함
- 보증서(Customs Bonds) 제공
    - 수입자는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조세 및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증서(Bonds)를 제공
    -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일회성 보증서(Single Bonds) : 한 번의 물품신고에 대하여 제공되는 보증
      -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s) : 수입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1년 내의 수입 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보증

## 4. 통관 및 검역

### □ C-TPAT 제도

- C-TPAT는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2002년 도입한 제도임
- WCO SAFE Framework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54개국이 도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불림
- 적용 대상으로는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계인, 항구 및 공항, 배송업자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로,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함
- 미국은 C-TPAT, 호주는 TTP(Trusted Trader Programme), 캐나다는 PIP(Partners in Protection)라고 부르는 등 국가마다 명칭이 다름
- C-TPAT는 수입업체의 보안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對미국 수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 절차를 더욱 신속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C-TPAT에 가입된 회원사의 경우 미 세관은 가능한 검사를 최소한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인증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체결되어 있어 국내 AEO 공인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속 통관 및 물품 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됨

## □ 검역

### 가. 동식물 제품 검역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업무
  - 항만이나 국경 내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 나. 식물 검역

-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됨
- 식물검역법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 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대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 식물, 기타 초본 식물, 구근(Bulb), 뿌리
  - 상기 묘목 이외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
    -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 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 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

## 다. 동물 검역

- 육류검사법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 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Coli 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함

## 라. 유제품 검역

- 유제품은 미 농무성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검역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됨
- 검사 제외 : 식료품 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 포함된 제품. 예를 들어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 내 동식물검역소 산하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마. 가공식품 검역

- 가공식품은 미국 식약청(FDA)이 담당 부처임
- 검역 관련규정
  - Federal Import Milk Act(FIMA : 21 USC Ch.4, Subchapter IV)
  - FDA REgulations(21 CFR Part131-Milk and cream and part 1210- FIMA regulations)
  -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C Ch.9)
  - Compliance Policy GuideCompliance Policy Guide
- FIMA Import Permit은 불필요함
- 국토안보국(CBP) 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
  -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해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 검사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하며, 조사 결과 안전 판정이 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이 거부됨

-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합당한 경우 수입이 허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 바. 식품표시법

### ○ 식품표시제도

- FDA가 관할하며, 식품명, 내용물의 실중량, 원재료명, 영양분석표 등을 주표시면(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
-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이 있음
  - 원재료표시 :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영양분석표시

- 1990년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영양표시 및 교육법)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에는 상세한 영양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두 가지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정부에 따라서는 연방 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성분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별 요구사항은 지방정부와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
- 지방정부에서 FD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영양 분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식품 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미 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의 검사기관(식품 제조회사와 관계없는 제 3의 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요구함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 요구할 수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 전 미국 내에서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이런 검사기관들은 주로 미국 내에 있음)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 ○ 특징

- 식품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음
-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부정 표시식품(Misbranded Food)로 간주하여 수입이 금지됨. 그러나 라벨링 규정에 맞도록 개선된다면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 ○ 기본표기사항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주 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 하단 30% 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 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표시 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 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자,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 라벨링 문의 연락처

### !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위치 : 5001 Campus Drive, College Park
- Tel : +1 240 402 2371
- Email : [cfsan.secure.force.com/InquiryPage](https://www.cfsan.secure.force.com/InquiryPage)(인콰이어리 페이지)

## 미국 식품 라벨 표시사항



- 제품명
- 제조
- 유통업체 명칭 및 주소
- 원재료 명
- 영양성분 분석표
- 순 중량
- 알레르기 유발 성

항목	설명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용기의 주요 면에 표기함</li> <li>- 활자 크기는 라벨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크기 이상이어야 함</li> </ul>
제조·유통업체 명칭 및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포장, 유통업자명과 주소 :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다를 경우,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 과 같은 문구 표기</li> </ul>
원재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된 성분의 중량을 기준으로 배열</li> </ul>
영양성분 분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벨의 주 표시 면과 후면에 모두 표기 가능</li> <li>- 제조자·유통자·포장형태를 표시한 곳과 같은 면에 표시</li> <li>- 중량이 무거운 순서대로 기재</li> </ul>
순 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면 하단에 위치하며, 미국 단위와 미터법 단위로 표시함</li> <li>- 1회 제공량을 표시하되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하여 기재</li> </ul>
알레르기 유발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 유발식품에서 추출된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을 함유하는 식품원료로 제조된 식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존재 표시</li> </ul>

## □ 검역 문의 연락처

### ■ APHIS Customer Service Center(PLANTS) ■

- 위치 : 1400 Independence Ave, SW Room 308-E, Whitten Building Washington, DC 20250
- Tel : +1 301 851 2046/877 770 5990 (Toll-Free)
- Email : Permit Services at [plantproducts.permits@aphis.usda.gov](mailto:plantproducts.permits@aphis.usda.gov).  
[plantproducts.permits@aphis.usda.gov](mailto:plantproducts.permits@aphis.usda.gov)

### ■ APHIS Customer Service Center(Pest Permits and Noxious Weeds) ■

- 위치 : 1400 Independence Ave, SW Room 308-E, Whitten Building Washington, DC 20250
- Tel : +1 301 851 2357, 866 524 5421
- Email : [Pest.Permits@aphis.usda.gov](mailto:Pest.Permits@aphis.usda.gov)

### ■ APHIS Customer Service Center(ANIMALS) ■

- 위치 : 1400 Independence Ave, SW Room 308-E, Whitten Building Washington, DC 20250
- Tel : +1 301 851 3300
- Email : [AskNCIE.Products@aphis.usda.gov](mailto:AskNCIE.Products@aphis.usda.gov)

## □ 관세 납부

- 세금 납부 미국은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및 조세 등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세관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보증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해준 보험 회사에서 발행 받으며, 보증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됨
  - 보증서는 ‘일회성 보증서(Single Bonds)’ 와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s)’, ‘현금 담보(Cash Deposit)’ 세 종류로 구분됨
  - ‘일회성 보증서’ 는 한 번의 물품신고에 대하여 제공되는 보증서이며, ‘계속성 보증서’ 는 수입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1년 내의 수입 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보증임
  - 세금은 세관 반입 이후 10일 이내 납세를 신고하며 납세 신고 시, 납세신고서와 물품 반출을 허가받은 통관서류, 상업송장 등 관세 책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율적으로 세 번,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 관세액을 우선 납부하면 물품이 반출되고 통관이 완료됨
  - 이후 사후 심사를 통해 확정 관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FTA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함.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
  
- 협정관세 적용 신청
  - 한-미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전에 세관당국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일반 통관절차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면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음
  -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 다만,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통관 및 관세 납부 문의 연락처**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 위치 : [www.cbp.gov/contact/ports](http://www.cbp.gov/contact/ports)(지역별 위치 검색)
- Tel : +1 800 877 8339

**┃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외공관 ┃**

- 위치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U.S.A
- Tel : +1 415 921 2251/3

**┃ 미국 뉴욕 제외공관 ┃**

- 위치 : 335 East 45th St., New York, NY 10017, U.S.A ,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U.S.A.
- Tel : +1 646 674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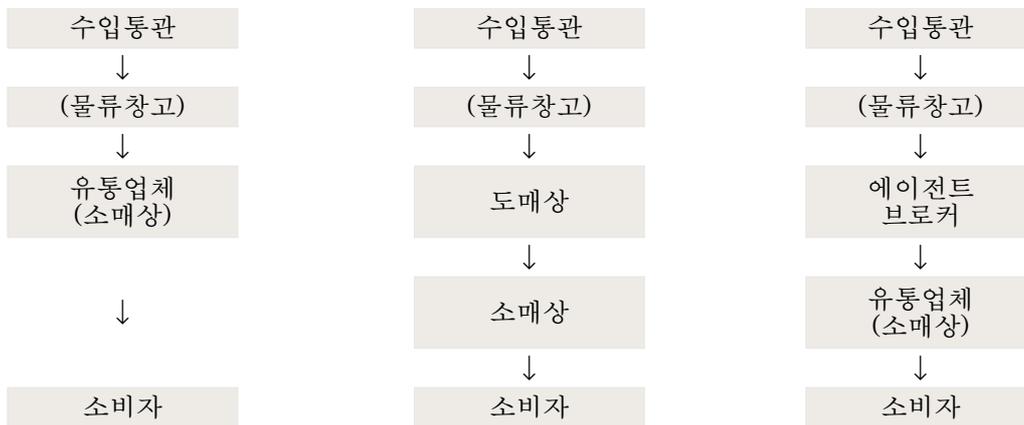
**┃ 미국 시애틀 제외공관 ┃**

- 위치 : 2033 Six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U.S.A
- Tel : +1 206 441 1011/4

## 5. 반출 및 운송

- 한국산 농식품의 경우 미국 현지 일반적인 물류경로를 거치고 있음
- 대부분 근거리 운송의 경우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나 원거리 운송의 경우 운송업체 차량 이용
- 미국 내 일반적인 수입식품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음

<미국 내 일반적인 수입식품 유통경로>



# 미국 농식품 수입 가이드북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처** 한식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홈페이지** [www.hansik.or.kr](http://www.hansik.or.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식진흥원에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